

# 학생교류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

(규정명 변경: 2017.05.26.)

2014.03.28.제정	2015.02.25.일부개정	2017.05.26.일부개정	2018.05.24.일부개정
2018.07.01.일부개정	2019.05.29.일부개정	2019.12.09.일부개정	2020.09.01.일부개정
2021.06.01.일부개정	2022.10.25.일부개정	<u>2023.09.01.일부개정</u>	

<학사관리팀>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 「학칙」 제38조(타 대학 등의 이수학점 인정)에 규정에 따라 동명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의 타 대학 또는 본교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대외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등에 대하여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## 제2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

**제2조(지원자격)** ① 재학 중 타 대학 수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, 졸업 마지막 학기에는 타 대학 수학을 제한한다.

1.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2.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
3. 기 이수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이 3.0이상인 자(단, 계절학기는 제외한다.)

② 타 대학과의 복수학위 또는 협정에 의한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마지막학기에도 타 대학 수강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③ 편입생의 지원 자격은 따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**제3조(지원신청)** 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도교수의 확인 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제교류처가 주관하는 국외 파견프로그램 지원자는 프로그램 지원 시 국외 타 대학 수학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.(개정 2023.9.1.)

1. 수학신청원 [별지 제1호 서식]
2.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(편입생은 전적학교의 성적증명서)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**제4조(절차)** ① 본교 학생의 타 대학에서의 수학은 지원서류를 학과장이 검토한 후, 소속 단과대

학장이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8.7.1., 2021.6.1.)

② **국제교류처장은 국제교류처가**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지원자 중 최종 선발자는 국외 타 대학의 수학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, 그 명단을 소속 단과대학 및 교무처에 통보한다. (**개정** 2018.7.1., 2021.6.1., **2023.9.1.**)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**제5조(수학기간)** 타 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, 제2조 2항의 경우 학칙에서 정한 제7조의 각 과정별 수학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. 단 계절학기 수업의 수강은 타 대학 수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**제6조(등록)** 타 대학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타 대학 계절학기 지원자는 수학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**제7조(타 대학 수학의 유형 및 학점)** 타 대학 수학의 유형 및 학점은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. (개정 2019.12.9, 2020.9.1.)

1. 학기 단위의 타 대학 과건 또는 교환 수학, 복수학위 : 「학칙」 제40조 및 「수업및학사운영규정」 제6조에 정한 학기당 수강학점(이하 “학기당 수강학점”이라 한다)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.
2. 학기 중 일부과목의 타 대학 수강 : 학기당 수강학점의 3분의1 이내로 하되, 본교 수강학점과 합산하여 학기당 수강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.
3. 타 대학 계절수업 : 본교 수강학점과 합산하여 학기당 8학점(연간 12학점)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.
4. 학기단위로 타 대학에 과건 또는 교환 수학을 하는 학생은 과건 또는 교환 수학하는 대학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**제8조(학점인정방법)** ①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류교육기간 종료 직후 [별지 제2호 서식]의 학점인정신청서(당해 성적증명서 사본 1부 첨부)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학과(부)장은 학점인정사항을 심의한 후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학점인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8.7.1., 2021.6.1.)

② 해외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점인정신청서(당해 성적증명서 사본 1부)를 **국제교류처로** 제출하여야 하며, **국제교류팀은** 해당서류를 확인 후학생의 소속학과(부) 또는 학부교양대학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학점인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**개정** 2018.7.1., 2021.6.1., **2023.9.1.**)

③ 교류대학에서의 취득학점의 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(개정 2018.5.24.)

1. 해외과건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P(pass)또는 NP(Non-Pass)로 표시하며 총 평점평균에는

포함하지 않고 총 취득학점에는 포함한다.

2. 국내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본교의 학점부여 기준 및 성적 등급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.
3.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영역에 대한 심의는 전공영역은 소속학과, 외국어영역은 학부교양대학에서 하며, 전공 및 외국어영역으로 인정받은 과목 외에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영역은 자유선택영역으로 인정한다.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### 제3장 타 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

**제9조(지원자격)**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타 대학 학생은 소속대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**제10조(수학신청)** 타 대학 수학지원자 명단과 관련 서류는 학기 개시(계절수업 개강) 1개월 전까지 소속 대학으로부터 통보받아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**제11조(수학허가)** 본교 총장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, 학기 개시(계절학기 포함)2주 전까지 소속대학교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**제12조(수학기간)** 수학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,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, 계절학기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. 단, 교류협정에 따른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수학기간은 협정내용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**제13조(정원)** 정규학기 타 대학 수학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(부)의 입학정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 수학 학생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**제14조(등록)** ① 정규학기 수학학생은 수학학기 기간 중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하고,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, 실험실습비 등을 본교에서 따로 징수할 수 있다.

② 계절학기 수학 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**제15조(수강신청)** 수학허가를 받은 타 대학 학생의 수강신청,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**제16조(취득학점)** 학기당 취득학점과 수학기간 동안의 취득학점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**제17조(학점인정 등)** ①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본교 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.

② 학생에게는 별도의 학번을 부여하고 취득한 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.

③ 타 대학 학생이 본교의 정규학기나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수학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소속대학 총(학)장에게 통보한다.

④ 타 대학 학생이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**제18조(신분증 발급과 시설물이용)** 본교 정규학기에 등록한 타 대학 학생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수학기간 동안 도서관 실험실습실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## 제4장 기타 학점인정

**제19조(기타 학점인정사항)** ① 국내·외 타 대학과의 교류로 취득한 학점 외에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본교에서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(개정 2019.05.29.)

1. 고교-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
2.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과정
3. 본교와 타 기관과의 학점인정 프로그램협약에 의하여 이수한 과정
4. 학칙 제38조 제5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
5. 기타 총장이 허가한 과정

② 1항의 각 호에 대한 학점인정은 해당 과정별 규정 및 지침에 따르고 성적은 P/NP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18.5.24.).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**제19조 2(취업연계 집중 교육 학점인정)** ① 우리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기업에서 운영하는 취업연계 집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.

② 교육과정 이수 및 성적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16학점 이내로 학점을 인정하며, 학점인정 기준은 「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을 준용한다.

③ 교육과정은 학기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하며, 산학교육처에서 참여자를 확정하여 학사관리팀으로 통보하고 이를 반영하여 일괄 수강신청 처리한다.

④ 출결 및 평가, 과제 등의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은 참여 프로그램 및 산학교육처의 기준에 따르며, 수강신청 요청 시 성적반영 기준을 학사관리팀으로 통보한다.

⑤ 취업연계 집중교육 관련학부(과) 소속 주전공자의 경우 전공선택으로 인정하며, 부·복수전공

자의 경우 부·복수전공 학부(과)장의 확인을 받아 부·복수전공으로 인정한다. 그 외의 학부(과) 소속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.

⑥ 교육과정 종료 후 산학교육처에서 출결 및 평가, 과제 등의 증빙자료를 검토 후 학사관리팀으로 통보하여 성적입력을 완료한다.

⑦ 성적 등급은 P(Pass) 또는 NP(Non Pass)로 표기하며, 평점평균에 합산하지 않는다.

⑧ 취업연계 집중교육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을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22. 10. 25.]

**제20조(준용규정)** 기타 이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「학칙」 및 학사운영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 (개정 2019.5.29.)

[전문개정 2017.05.26.]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[전문개정 2017.05.26.]

## 수학신청원

학번		대학(학부)		학과(전공)		학년	
성명		생년월일		총취득학점		평점 평균	
주소				연락처			
수학대학교							
수학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	

교과목명	학점	시수	비고

첨부서류 : 성적증명서 1부.

위와 같이 수학신청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본인		(인)	지도교수	(인)
			학과장	(인)
허가	<input type="checkbox"/>	(허가사유)		
불가	<input type="checkbox"/>	(불가사유)		
_____ 대학장 (인)				

[별지 제2호 서식] [전문개정 2017.05.26., 개정 2021.6.1.]

## 학점인정 요청서

소속대학		학과		학번		이름			
교류내용									
교류대학				국가					
수학 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교육시간: )								
교류대학 이수내역				우리대학 인정내역					
과목명		학점	성적	과목명		최종 인정 학점	인정 영역	*등급	*과목 코드
국문	영문			국문	영문				
첨부서류 : 이수성적증명서									
신청과목수:          신청학점계:					인정과목수:          인정학점계:				
동명대학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px;">                     년    월    일                 </div>									
본인	(인)			학과장			(인)		
				(학부교양대학장)			(인)		
_____ 대학장 (인)									

교무처장 귀하

\*등급 및 과목코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